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시행) 소개

안 장 수 / 국립보건원

1. 소개의 말

중국의 현대화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작금에 이르러 우리의 교역상 대국으로도 깊이 생각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본 소개자는 식품위생관련업무를 취급하면서 아직은 중국의 식품제조 가공기술이 미진하지만 그 나라에서도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현대화의 생활양식이 도입되면 식품무역에서도 활발한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향후 우리의 기술과 중국의 저렴한 원료가 상호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때를 대비하여 중국의 식품위생법과 관련사항들을 이해하여 두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 나라의 식품위생법과 관련사항들에 대하여 항상 궁금하게 여겨왔던 바 근래 몇 가지 자료들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들 내용을 정리하여 식품위생 관련자 또는 기업 종사자가 중국의 식품위생행정체제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식품위생법규와 조직에 관한 설명 등을 소개하는 바이다.

2. 중국의 식품위생법 체계의 정비

중국은 우리나라(휴전선 이남)의 약 97배나 되는 광대한 국토와 50을 넘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된 이래 정부는 인민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위생법규를 공포하여 왔으나 그 중에서도 식품위생에 관한 법규는 중요하게 여겨왔다. 광대한 국토를 가진 중국은 현재 22개의 성 3개 직할시(북경, 상해, 천진)과 5개 자치구의 행정구분이 되어 있으나 아열대에서 한대까지의 기후풍토의 차이도 대단하다. 많은 민족을 포용하므로써 각각의 습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꽤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식품위생관련체제는 먼저 지방의 수준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인 법체계의 정비이전에 개개의 규제가 선행하고 있었다. 예를들면 1950-52년에 음식물 취급규칙이 북경, 천진 등에서 제정되었으나 국가수준으로는 처음으로 공중보건부(현재 위생부)에서 음식물 취급의 잠정조례가 공포되었다. 따라서 1955년 이래

식용합성색소 취급잠정조례, 식육위생시험법(잠정), 각종 식품위생규격 등이 점차로 제정되어 전국적인 규제가 차체에 정비되고 있었다.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법규가 작성되게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4인방이 체포되고 문화 대혁명도 끝나 점점 새로운 근대화 노선에 젖은 1979년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다. 1979년 국무원은 1965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시행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식품위생관리조례」를 정식으로 고시하였다. 그리고 1982년 11월 19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시행)」이 전국 공산당 중앙대표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동일자로 공포되어 1983년 7월 1일 시행되었던 것이다. 식품위생법의 작성은 중국 국무원에 법안기초위원회가 설치되고 1981년부터 1982년 10월까지 약 2개년에 걸쳐 8회의 초안이 작성되었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초안작성은 미국, 일본, 서독의 식품위생법규를 참고하였다고 하며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일본의 식품위생법에 유사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3. 중국의 위생행정기구와 식품위생에 관한 정부위원회

현재 22개 성, 3개 직할시(북경, 상해, 천진)과 5개 자치구의 하부조직으로 시, 구, 현(우리나라의 군에 해당, 전국에 1100개 현이 있다고 함)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에 위생행정 부문을 담당하는 부문이 있다. 식품위생행정도 그 조직에 포괄되어 있다. 중국의 위생행정중앙기관으로서 위생부(우리나라 보건사회부에 해당)가 있고 이 중에 위생방역사(司)(우리나라 위생국에 해당)가 있으며 그 밑에 식품위생처(처는 과에 해당)가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와 같은 성에는 위생청(우리나라의 지방보사국에 해당)이 있다. 그 아래에 위생방역참(站)(우리나라의 보건소에 해당, 다만 위생방역참은 성, 시, 현의 등급이 있으며 상급의 참은 하급의 참을 감독 지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있다고 한다)이 있다. 이같은 위생

방역참은 위생행정의 센터가 되기도 하며 일상의 위생검사업무도 하고 있다.

아울러 상기 일반적인 조직이외 삼림, 철도, 유전, 대농장, 제철부문에서는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방역참이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광대한 국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이나 지구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틀리고 50을 넘는 소민족들이 존재하는 등 풍속습관이나 식생활의 내용도 크게 차이가 있어 식품위생행정의 실시상황도 가지각색이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이 의도하는 바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데 있으며 근대적인 과학기술에 따라 행정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제 42조)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관인「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식중독방지,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작성,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등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 심의하게 되어 있으나 중국에서는 신식품위생법, 하위법에서 그와 같은 조사심의체제가 있어 학식경험자가 참여하고 있다.

(1) 식품첨가물 표준위원회

1979년 국무원표준국에 설치되어 위원수는 20여명 위생부에서는 4명이 참가하고 따로 화학공업부, 경공업부 등의 위원이 구성되어 식품첨가물의 인가와 사용기준 등의 규격기준 책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식품위생 표준기술위원회

1982년 처음으로 설치 우리나라의 식품위생 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구로서 위생부에 소속한다. 1982년에 시작하여 위원수는 9명이며 1명의 주임과 1명의 부주임이 있다.

(3) 농업등기 심사위원회

1982년 8월에 설치 농목어업부(1982년 농업부, 임업부가 합병하여 새로운 부가 되었다)에 소속하여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생부(우리나라의 보건사회부 해당)에서 5명

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농약의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관계가 있는 5개부에서 선출된 행정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시행)

(1982년 11월 19일 제 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차 회의에서 채택
1983년 7월 1일 시행)

제 1장 총칙

제 1조 식품위생을 지키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오염과 유해물질을 방지하고 인민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며 여러 민족 인민들의 체질을 증강하기 위하여 특히 본법을 제정한다.

제 2조 국가에서는 식품위생감독제도를 실시한다.

제 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 식품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본법을 지켜야 한다. 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이것을 검거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본법은 모든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와 기구설비에 적용되며 식품의 생산경영장소, 시설과 해당 환경에도 적용된다.

제 2장 식품위생

제 4조 식품은 무해, 무독하여야 하고 규정의 영양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색깔, 향기, 맛 등 감각적인 성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 5조 젓먹이와 유아에게 주는 주식과 부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서 지정한 영양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6조 식품을 생산과 경영을 할려고 할 때는 다음의 위생요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파리, 쥐, 바퀴와 그외 해로운 곤충을 없애고 유해, 유독한 장소와는 규정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식품을 생산과 경영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그 생산, 품목에 상응하는 식품원료를

처리, 가공포장할 수 있는 공장건물 또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3) 소독을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세면을 하고, 적당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방진 및 방부, 파리 및 쥐를 막고 깨끗이 씻고 오수의 배출, 쓰레기 및 폐기물을 버릴 장소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4) 설비배치와 가공공정은 합리적이어서 하며 가열하지 않은 식품과 가열한 식품, 원료와 제품이 서로 접촉되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을 불결하거나 유독한 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식기, 차그릇 직접 마실 수 있는 식품을 담는 용기는 깨끗이 씻고 소독하여야 하며 취사용기, 식기는 사용 후 깨끗이 씻어야 한다.

(6) 수송 및 싣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식품의 포장 용기 기구 설비는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은 무독하고 청결한 포장재로서 간단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8) 식품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항상 개인위생을 지켜야 하며 식품을 생산판매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청결한 작업복과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며, 직접 먹는 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판매용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사용하는 물은 국가에서 정한 도시, 농촌의 생활용수 위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을 상인하려는 상인 및 도시, 농촌의 시장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경영자의 식품 생산 경영과정에 대한 위생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참조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 7조 다음과 같은 식품의 생산경영을 금지한다.

(1) 부패 변질한 것, 산패된 유지, 곰팡이가 생긴 것, 벌레가 있는 것, 오염되었거나 불결한 것,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든지 감각적으

로 이상이 인정되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유독, 유해한 물질이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 기생충을 함유하거나 미생물 또는 미생물 독소의 함량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

(4) 수의사의 위생검사를 받지 않았든지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 및 제품

(5) 병사 또는 중독사하였든지 사인이 불명한 식조류, 가축, 아생동물·수산동물 등과 그 제품

(6) 용기 포장이 오염되어 불결하다든지 심하게 파손되었다든지 또는 운반용구가 불결하여 오염된 식품

(7) 가짜 또는 가짜를 섞어서 만든 것으로서 영양 또는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8) 비식용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것

(9) 보존기간이 지난 것

(10) 질병방지 등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 또는 자치구, 직할시 등의 인민정부가 특별히 판매금지를 정하고 있는 것

(11)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첨가물 또는 농약을 함유(진류)하고 있는 것

(12) 그외 식품위생 기준 또는 규정에 적합한 것

제 8조 식품에 약물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즉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약품인 것, 조미료 또는 영양강화제로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제 3장 식품첨가물의 위생

제 9조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품질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무원,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화학공업, 경공업, 석유, 임업, 수산, 의약품 등 주관부문의 지정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제 10조 생산경영을 함에 있어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첨가물의 사용 위생기준 및 위생관리 방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 또는 비지정공장의 제품을 경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장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기구 및 설비의 위생

제 11조 식품용기, 포장재료 등 식품용의 기구 및 설비는 위생기준 및 위생관리 방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12조 식품용기, 포장재료 등 식품용의 기구 및 설비의 생산은 위생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품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제 13조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종이, 플라스틱, 고무 등의 제품과 도료는 생산주관부문의 책임있는 조직이 전문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 5장 식품위생기준과 관리방법의 제정(제도)

제 14조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의 용기 및 포장재료, 식품용의 기구 및 설비에 사용하는 세척제 그리고 식품 중의 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의 허용량에 관한 국가위생기준과 위생관리방법 및 시험검사규정은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이 설정하거나 혹은 신청을 허가하여 공포한다.

제 15조 국가가 위생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식품에 대하여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행정부문에 신고하여 지방위생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식품의 생산경영의 주관부문 혹은 식품생산기업은 동급의 위생부문의 동의를 얻어 제품의 품질기준 중에 위생지표를 넣을 수 있다.

제 16조 식품첨가물에 관한 국가의 제품 품질기준중 위생학에 관한 지표에 대하여는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이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농약, 화학비료 등의 농업용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 판정은 국무원의 위생행정부문이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가축 및 가금의 도살에 관한 수의 위생검사 규정은 국무원의 관련부문과 위생행정부문이 합동으로 제정한다.

제 17조 위생기준 등 위생관리 방법과 시험검사 규정의 각 항목은 본 규정을 제정 혹은 공포한 부문이 실제의 필요성에 따라 즉시 수정개정을 하거나 심사결정을 한다.

제 6장 식품위생관리

제 18조 식품의 생산 경영기업의 주관부문은 당해 계통의 식품위생작업에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법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조 식품의 생산경영 주관부문과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당해 계통, 당해 단위(기관)의 위생관리를 건전하게 확립하고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어 전임 또는 겸임의 위생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 20조 식품위생관리, 시험검사설비 및 식품위생관리자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규와 관련규칙 조령제도를 관철집행하고 식품생산경영의 종사자에 대한 조직적인 양성훈련을 한다.

(2) 식품과 식품생산경영의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와 시험검사를 한다.

(3) 식품위생업무에 대한 감시를 하고, 식품위생법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판 제지시키는 동시에 상급기관과 식품위생감독기관에 상황을 보고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제 21조 식품의 생산경영기업의 신규건설 확장, 개축공사 예정지의 지정과 설계는 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설계의 심사와 공사의 검수는 식품위생감독기관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 22조 새로운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과 새품목의 식품첨가물은 생산경영기업이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제품의 위생평

가와 영양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 기구 및 신제품의 설비는 생산경영기업이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당해 제품의 위생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품목, 신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요구가 있으면 견본품을 제출하고 규정한 식품위생기준의 심사수속에 따라 심사를 신청할 것

제 23조 규정한 형식의 포장식품과 식품첨가물에는 그 제품의 설명서 또는 상품표시가 필요하다. 즉 각 제품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품명, 산지 공장명, 제조년월일, 롯트번호(또는 상품번호), 규격, 배합성분 또는 주요성분, 보존기간, 먹는 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품설명서 또는 상품표시는 과대 또는 허위의 선전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24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 또는 화학검사표를 요구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꼭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서류를 요구할 필요범위와 종류는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위생행정부문의 규정에 의한다.

제 25조 식품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처음으로 종사한다든지 임시로 종사하는 식품경영종사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증명서를 취득한 다음에 관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등의 소화기계 전염병(보균자를 포함), 개방형 폐결핵 및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부에 이환된 자 또 식품위생상 유해한 질병이 있는 자는 사람이 직접 먹는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26조 식품생산경영기업과 식품판매자는 반드시 먼저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다음 상공행정관리부문에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생허가증 발행과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위생행정부문의 규정에 의한다.

제 27조 농촌과 도시 시장의 식품위생관리업무와 일반식품 위생검사업무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책임지며 식품위생감독과 검사업무는 식품위생감독기관에서 책임지며 가축, 가금, 수의위생 검사업무는 농정어업부문이 책임을 진다.

제 28조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의 용기, 포장재료와 식품용의 기구 및 설비는 국가의 위생기준과 위생관리방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기의 수입하는 각 품목 제품은 국경식품위생감독기관에서 위생감독과 검사를 한다. 수입자는 검사를 신청할 때 수출국(또는 지구)에서 사용한 농약, 첨가물, 훈증제 등 관계자료와 시험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국경식품위생감독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통관한다.

제 29조 수출하는 식품은 국가의 수출입 상품 시험검사부문이 위생감독과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세관은 국가의 수출입상품 검사부문의 증명서에 따라 통관한다.

제 7장 식품위생감독

제 30조 각급 식품위생행정부문에서 식품위생감독업무를 지도한다.

제 31조 위생행정부문에 소속하는 현 이상의 위생방역소(한국의 보건소에 해당) 또는 식품위생감독검사소는 식품위생감독기관이 되며 해당 관할범위내의 식품위생감독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철도, 교통, 공장 및 광산의 위생방역소는 관할범위내에서 식품위생감독기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며 당해 지방식품위생감독기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32조 식품위생감독기관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자격에 합격한 전문인이어야 하며 동급의 인민정부가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철도, 교통, 공장 및 광산의 식품위생감시원은 그 상급 주관부문에서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33조 식품위생감독기관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에 대하여 감독, 측정, 시험검사 등 기술지도를 한다.

(2) 식품의 생산경영종사자의 양성훈련에 협력하고 식품의 생산경영종사자의 건강진단을 감독한다.

(3) 식품위생 및 영양지식을 보급선전하며 식품위생을 평가하고 식품위생 상황을 널리 알린다.

(4)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신축확장 및 개축공사 예정지와 설계에 대하여 위생적인 각도에서 심사를 하고 공사의 접수내용에 넣는다.

(5) 식중독 및 식품오염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규제조치를 한다.

(6) 현장검사와 순회감독을 하고 발생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7) 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추적 조사하고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다.

(8) 기타 식품위생감독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4조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독기관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집행한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임무를 집행할 때에는 식품생산경영자로부터 사정을 청취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생산경영의 장소에 입회하여 검사하고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생산경영자는 이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은폐하거나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생산경영자가 제공한 기술자료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 35조 국무원에 이어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위생행정부문은 필요에 따라 식품위생감독기관 이외에도 조건을 구비한 시설이 있으면 식품위생검사기관(단위)으로 지정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검

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36조 식중독이 발생한 시설 및 그 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한 기관은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재지의 식품위생감독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장 법률책임

제 37조 본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상황이 비교적 무거운 때는 식품위생감독기관은 이하의 행정처벌을 과할 수 있다.

- (1) 경고를 주고 일정기간내 개선하도록 한다.
- (2) 강제명령에 따라 금지된 생산경영의 제품으로서 판매용으로 출하한 것을 회수시킨다.
- (3) 금지된 생산경영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몰수하거나 폐기한다.
- (4) 벌금은 20원 이상 3만원 이하
- (5) 강제명령으로서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하도록 한다.
- (6) 위생허가증을 되돌려 받는다.

즉 위생허를 취소하거나 5천원 이상의 벌금을 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 이상의 인민정부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각 항목의 행정처벌은 한 항목에 따라 부과할수도 있고 여러 항목을 병과할 수도 있다.

몰수한 물품은 식품위생감독기관이 감독 처리한다.

제 38조 식품위생감독기관의 행정처벌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소할 수 있다. 즉 식품을 규제하는 결정은 바로 집행하여야 한다.

벌금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고서도 제소하지 않았을 때 식품위생감독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시행)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수속을 한다.

제 39조 본법을 위반하여 식중독사고를 발생시켰다든지 그외 식품을 원인으로한 질환을 발생시킨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손해배상에는 의료비, 의료품비, 휴직보상, 생활보조비, 장의비, 유족구제금 등이 포함된다.

제 40조 손해배상요구는 현 이상의 위생행정부문이 처리한다. 불복하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 그 대리인도 직접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손해배상요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를 받은 상황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는 수리하지 않는다.

제 41조 본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식중독 사고 또는 중대한 식인성질환을 발생시켰다든지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거나 후유증에 의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상황에 적용하여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87조 114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상황이 경미할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며 주관부문이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 9장 부칙

제 42조 국무원 행정부문은 본법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제 43조 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 : 사람들의 식용 또는 음료용으로 제공되는 각종 제품 및 원료 그리고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약품이었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한 것은 제외한다.

식품첨가물 : 식품의 품질, 선택, 향미를 개선하기 위하여나 방부 또는 식품의 제조가 공에 필요하여 식품에 첨가하는 화학적합성품 또는 천연물을 말한다.

식품강화제 : 영양성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 중에 가하는 천연 또는 화학적합성품이며 천연영양소의 범주에 속하는 식품첨가

물

식품용기·포장재료: 포장, 식품을 담는데 사용하는 종이, 참대, 나무, 금속, 법랑기, 도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 등 제품과 식품과 접촉하게 되는 도료를 말한다.

식품용 기구, 설비: 식품의 생산경영의 과정에서 식품에 접촉하는 기계관, 벨트 콘베이어 용기, 용구, 식기 등을 말한다.

식품생산경영: 식품의 생산(재배업과 양식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채취, 수매, 가공, 저장, 수송, 진열, 공급, 판매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의 생산경영에 종사하

는 모든 기관(단위) 또는 개인, 식당직원, 식품판매상 등을 포함한다.

제 44조 수출식품의 관리방법은 국가의 수출입상품검사부문이 국무원위생행정부문과 해당생산주관부문이 공동으로 별도 제정한다.

제 45조 본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관리조례」는 폐지한다.

과거에 공포한 식품위생법규로써 본법에 저촉하는 것은 본법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식료품생산, 경영종업원학습재료(연변식료위생감독검사소), 중국의 식품위생법규(일본 하단준치번역본).

식품첨가물공전 판매안내

본회는 최근 개정 고시된 식품첨가물공전을 한정판으로 발행, 판매 중에 있어오니 아래의 요령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판매가격 : 권당 20,000원
- 판매장소 : 한국식품공업협회 소비자상담실
(585-5052, 5053, 554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지방에서 우편구입시에는 우체국발행 소액환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